

## ● 관세청고시제2012-20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20호)를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10월 10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증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말한다.
2.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원산지관리전담자”란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리 및 확인 등 원산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증신청 절차

제4조(원산지인증신청자의 범위)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별표1]에 따른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방법)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인증신청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하거나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이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을 신청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②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 제3장 인증요건 및 인증심사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5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신청인이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5일전까지 연기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이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4장 인증요건 점검 및 원산지자율증명물품 관리

제14조(관할세관 및 변경절차)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그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율원산지증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관할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관할세관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 규칙 제7조제5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14조에서 정하는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1.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HS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①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 할 수 있다.

- ② 관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인증일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원산지사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2. 세관장의 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보정요구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수출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정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절차를 준용한다.

③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불응·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한 부서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12장의 관세조사(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심사(탈루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또는 사전검증을 실시한 경우

제18조(시정요구) 규칙 제7조제9항 및 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11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청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제1항과 제2-4-8조부터 제2-4-14조까지의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관 할 구 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성세관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상세관, 사천세관, 진주세관,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전주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확인서류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 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1.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2. 주요 수출(생산)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1.프로세스 적정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2.서류작성 적정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검증 대비)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별표 3]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기준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 음 -

①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건당 1점(최대 15점)

②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FTA) 법령	·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 FTA 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관리 실무	·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③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대 5점

(단, 관세사·공인회계사·관세업무 담당 변호사 : 20점)

④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⑤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 : 2점~5점

(1년 이내 : 2점, 2년 이내 : 3점, 3년 이내 : 4점, 3년 이상 : 5점)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외부 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제외한다)

## [별표 4]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5개이내)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사전검증시 확인한 협정·HS6단위 생략가능)
세부 내용	○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 주요 수출(생산)품목 5개 이내 선정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서류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 ● 관세청고시제2012-2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10-81호, '10. 6.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0-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2-4-7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요건 등”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1항제3호에 따른”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8조부터 제2-4-14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의 감지 서식], [별지 제2호의 을지 서식], [별지 제2호의 병지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기재요령]을 삭제한다.

※ 별지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